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1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4월 26일

발 의 자: 김규남, 고광민, 김경훈,
김길영, 김영철, 김종길,
김태수, 김혜영, 문성호,
민병주, 박상혁, 박성연,
서상열, 서호연, 송경택,
신복자, 유만희, 윤영희,
이민석, 이병윤, 이종배,
이종태, 이효원, 장태용,
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
최호정, 허 훈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으며, 이러한 범죄 행위의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적되고 있음.
- 이에 실거주 목적의 청년 임차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, 주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임차권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임차를 위하여 주택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) ①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서

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,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
2.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
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
4.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
5.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

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7조”를 “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의2(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) ①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,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</u> <u>2.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</u> <u>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</u> <u>4.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</u> <u>5.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</u> <p><u>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임대차 정보제공 등</u></p>

제8조(청년주거실태조사) (생략)

② (생략)

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주거 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·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(청년주거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---
--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---

-----.